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8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민형배·박희승·서미화

조인철 • 이수진 • 노종면

이정문 • 어기구 • 김문수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선 등을 통해 공중에 날아 흩어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이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대량 살포가 이어집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큽니다.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발생시킵니다. 풍향을 고려해 날려 보내도 북한 지역에 떨어지는 비중이 낮은 데다그마저도 대부분 산지에 떨어집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대에서 수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상습적 쓰레기 투기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유입·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구에 온 손님일 뿐입니다.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의2·제8조제4항 및 제68조제3항제2 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이란 쓰레기 또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불문하고 풍선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유입·투기되는 것으로서 공중 비산에 따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을 공중에 유입·투기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6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2의2.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이
	란 쓰레기 또는 사람의 생활
	에 필요한 물건을 불문하고
	풍선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유입 • 투기되는 것으로서 공
	중 비산에 따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
	기물을 말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누구든지 비산위험 공중폐
	기물을 공중에 유입・투기하여
	<u>서는 아니된다.</u>
제68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 14. (생 략)

④ (생 략)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